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령

배재웅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과 사무관



원

자력법 시행령의 개정령이 97년 5월 9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새로 개정된 원자력법(법률 제5233호, 96년 12월 30일 공포)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법은 96년 6월 원자력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원 장관)에서 확정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방안」을 관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원자력위원회는 통상산업부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던 원자로

계통 설계 업무, 핵연료 설계 및 중수로 핵연료 제조 업무는 96년말까지 관련 산업체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자력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기로 하고, 전년도 원자력 발전량(kWh)당 1.20원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법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이관에 따라 원자력법에서는 폐기 시설의 건설 운영 허가와 각종 검사의 실시 등 안전 규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발효된 국제원자력안전협약의 이행과 객관적인 안전 규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고, 역무 제공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방사성 동위원소를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사업자가 원

전 시설 및 폐기 시설 주변의 방사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때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였다(〈원자력산업〉 96년 12월호 6~13쪽 참조).

이번 원자력법 시행령의 개정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및 징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였다.

또한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방법, 기술료의 징수 및 면제, 산업 재산권의 귀속과 공동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하는 전문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과학기술처 장관이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 허가 또는 운영 허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폐기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허가의 신청 절차를 재정비하였으며, 허가 신청자에게는 심사 계획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기금의 용도

새로 설치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장비 지원 사업(법 제10조의5), 그리고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0조의18)에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92년에 수립하여 추진해 오던 원자력 연구 개발 중장기 계획 사업은 신설된 기금에 따라 새로운 연구 개발 계획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6월중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처 장관은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303조),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 동향의 조사 분석, 기술 수요의 예측과 연구 개발 과제의 접수·검토·평가 및 협약 체결, 진도 관리, 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23조 및 별표6).

기금의 징수 및 절차

원자력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해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



원전 가동전 검사 장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 제20조의10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율'을 킬로와트시간(kWh)당 1.20원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금년도에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지난해의 원자력 발전량 739억kWh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887억원에 이른다.

향후 10년간의 기금 조성 규모는 1조2,1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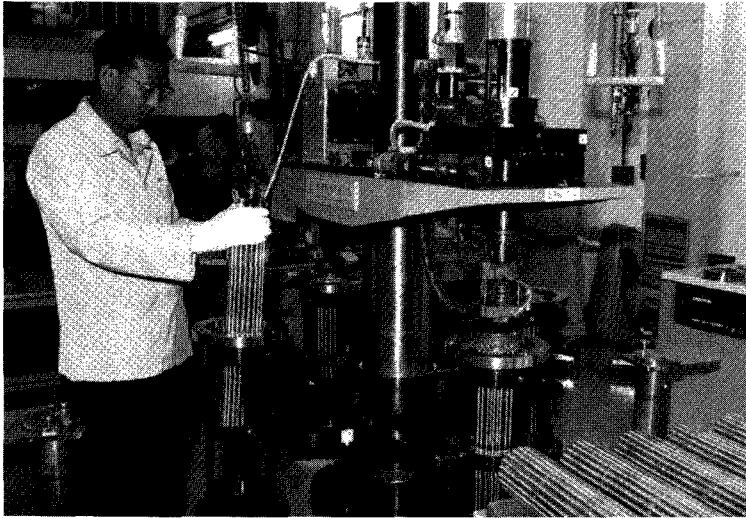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 관리 운용의 주체인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0조의12), 과학기술처 장관은 매반기마다 전년도 해당 반기의 원자력 발전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이 경우 납부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이다(제20조의11).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금 관리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기금 관리 주체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이같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원자력법 시행령에 과학기술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타 과학기술처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중수로형 핵연료 다발 자동 용접기로 CANFLEX 핵연료 다발을 조립·용접하고 있는 모습

으로 구성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였다(제20조의 15).

관계 부처의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이며, 심의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제20조의 16).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 계획과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제20조의 16).

과학기술처 장관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과 사용 계획 등에 관한 기금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 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된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 과학기술처 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며(제20조의 20), 소속 공무원으로 기금 출납 담당자를 임명하여 기금의 출납 현황 등을 기록 관리하게 된다(제20조의 19 내지 제20조의 23).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크게 바뀐 사항은 없으나, 새로 설치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재

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술료 및 산업 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주관 연구 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 사업의 연구 결과가 산업에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그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당사자와의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연구 개발 사업의 결과를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원자력 발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의 8).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연구 개발의 성과는 주관 연구 기관이 소유하되,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또는 연구 개발 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와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의 9).

이는 관련 산업계가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자로 건설 운영 허가의 처리 기간

현 원자력법령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 허가 또는 운영 허가의 처리 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 총무처 장관의 고시로서 24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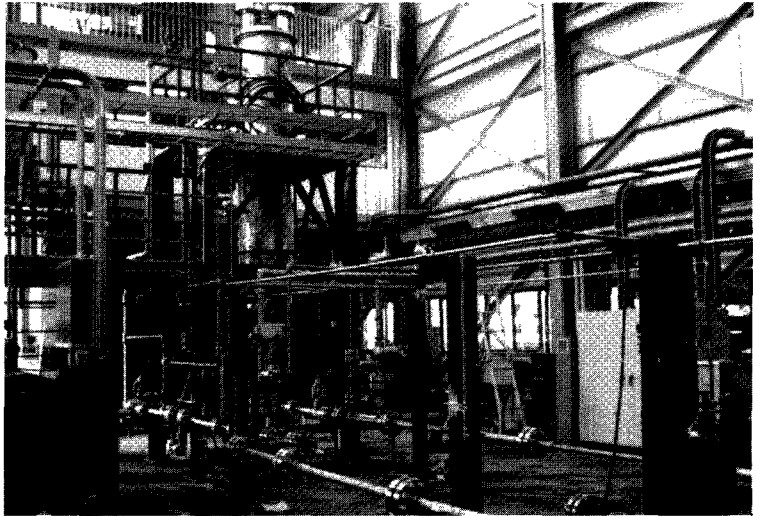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예측 가능한 허가 일정을 미리 알려주어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한 안전 규제의 능률성을 높여 원자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권자인 과학기술처 장관은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월 이내에 허가의 여부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이미 허가한 바 있는 원자로와 용량·노형 및 과학기술처 장관이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 재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15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처리하도록 하였다(제21조의 3 및 제33조).

그러나 허가 신청자가 신청한 서류를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원자로가 설치되지 않아 사용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허가의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시간에 쫓겨 안전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는 제외시켰다.

폐기 시설 등의 건설 운영 허가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한 경우, 과학기술



고압 증기 방출 및 응축 실험 시설

처 장관은 신청 서류의 적합성 여부와 심사 계획을 허가 신청서 제출일 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 계획의 투명성을 확보도록 함과 함께 허가 심사에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제221조).

폐기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였다(제223조).

시행 규칙의 개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을 위한 부담금 고지서의 서식과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전력 생산량을 보고하는 서식 등을 마련하는 원자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초에 확정되어 공포되었다.

향후 계획

이러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역무 제공업 등록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자력법 시행령의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계 부처와도 개정 협의의 끝낸 상태여서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